북한산이래뜨 입주자모집공고 (5년 공공건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신청시간 08:00~17:30)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간건설중점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입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이후 주택청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투기 억제지 지정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활용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영업일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8.)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세대수 대비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청약접수를 하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방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제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 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2순위' 방식을 '1,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외의 지역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1년, 12회 납입' → '6개월, 6회 납입'으로 변경
-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중점국민주택(입대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에 "무주택세대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세대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획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원(세대주인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60㎡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02.27.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9조 5항,규칙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8.)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등록일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민등록표본에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해당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하층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 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①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내역을 취소하고 해당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② 투기과열지구 중복 신청자 수 많으며 중복 청약 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청 건축과-21959호(2015.08.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급내역

1. 공급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59-1번지 일원

2. 공급규모 및 내역

- 대지면적 : 49,466㎡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26~29층 10개동 총 1,3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총 602세대포함 (기관추천특별공급 133세대, 다자녀특별공급 13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3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6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8세대)

3. 공급대상 및 면적

- 국민주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악식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세대별 대지 지분	공 급 세 대 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 계		계	특 별 공 급					일반공급
				주 거 전 용	주 거 공 용	소 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국민주택	201500019~01	43.5457A	43A	43.5457	22.4108	65.9565	43.1211	109.0776	26.6201	324	32	32	32	9	64	155
	201500019~02	43.8479B	43B	43.8479	22.0863	65.9332	43.4203	109.3535	26.8048	243	24	24	24	7	48	116
	201500019~03	59.7860A	59A	59.7860	20.5653	80.3313	59.1833	139.5146	36.5357	244	24	24	24	7	48	117
	201500019~04	59.9297B	59B	59.9297	20.5375	80.4672	59.3453	139.8125	36.6358	26	2	2	2	–	5	15

- 민간건설중점국민주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악식	세 대 별 계 약 면 적 (㎡)					세대별 대지 지분	공 급 세 대 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 계		계	특 별 공 급					일반공급
				주 거 전 용	주 거 공 용	소 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민간건설중점국민주택	201500020~01	72.7084	72	72.7084	24.0262	96.7346	71.9994	168.7340	44.4476	341	34	34	34	10	–	229
	201500020~02	84.8089	84	84.8089	26.9498	111.7587	83.9820	195.7407	51.8448	170	17	17	17	5	–	114

- 주택형 표기방식을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 표시하였음.
- 주택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 전기실 등의 면적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정하였으며 배정비율은 입주시 또는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급면적에는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공급금액

1. 국민주택(임대)

(단위 : ㎡/천원)

주택형	공 급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층별 구분	표 준 임 대 조 건				전 환 임 대 조 건			
				임 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임 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계약금	잔 금			계약 시	입주지정일
						계약 시	입주지정일				
43.5457A	324	12	전층	43,688	365	3,500	40,188	87,376	311	7,000	80,376
43.8479B	243	9	전층	43,460	365	3,500	39,960	86,921	311	7,000	79,921
59.7860A	244	9	전층	53,072	472	4,500	48,572	106,145	406	9,000	97,145
59.9297B	26	1	전층	53,558	472	4,500	49,058	107,116	405	9,000	98,116

2. 민간건설중점국민주택(임대)

(단위 : ㎡/천원)

주택형	공 급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층별 구분	표 준 임 대 조 건				전 환 임 대 조 건			
				임 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임 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계약금	잔 금			계약금	잔 금
						계약 시	입주지정일			계약 시	입주지정일
72.7084	341	12	전층	63,869	605	5,500	58,369	127,718	525	11,000	116,718
84.8089	170	6	전층	76,124	696	6,500	69,624	152,248	601	13,000	139,248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예정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임대보증금 잔금의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후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승인서일 기준으로 분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료 사용금지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는 준공 후 입주시 단지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해당 아파트의 주택도시기금이 건설업체에 대출되며 보증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입대자기간 중에는 시업주체가 납부하고 분양전환 시는 분양받은 자가 납부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기관추천 다 자 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2015. 09. 02.(수) (10:00~14:00)	당사 분양사무소
	당 첨 자 선 정	2015. 09. 02.(수) (16:00)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일시는 특별공급 신청접수 사정에 따라 시간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 동 · 호수 선정 및 발표일은 일반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선정 발표일과 동일합니다.

특별공급 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43A	43B	59A	59B	72	84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32	24	24	2	34	17	133
다 자 녀 특별공급	32	24	24	2	34	17	133
신혼부부 특별공급	32	24	24	2	34	17	133
생애최초 특별공급	64	48	48	5	–	–	16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7	7	–	10	5	38
합 계	169	127	127	11	112	56	602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기관추천), 제2항(다자녀), 제3항(신혼부부), 제4항(생애최초), 제5항(국가유공자등), 제13항(노부모부양)에 해당되는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0%, 신혼부부특별공급 10%, 생애최초특별공급 20%/43A, 43B, 59A, 59B형만 해당),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3% 범위 내에서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은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 입주자자격 기입요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기간추천은 해당사항 없음 / 국민주택은 ① / 민간건설중점국민주택은 ①~④ 해당)
    ①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④ 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생애최초는 ① / 노부모부양 중 국민주택은 ① / 민간건설중점국민주택은 ①~④ 해당)
    ①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④ 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 입주자자격 기입요건에서 제외되는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의 입주자자격 기입요건 제외항목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자인 경우 해당 주택신청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특별공급에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등의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통하여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환불하여 드립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등 해당 기관(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에서 추천 또는 인증을 받은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8.) 현재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입주자추천 기입요건 해당자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기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l2you.com에서 발급)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인감도장(본인사용분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사용분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접수시 무주택세대주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위임장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주민등록등본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가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8.)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이거나 출산(출산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출산한 것으로 봄) 또는 입양 후 6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통계청 고시)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 월평균소득의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이란 함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자 및 만4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만4세이상의 청약자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금액이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액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l2you.com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단,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징구)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청약자 및 만4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인감도장본인사생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접수시 무주택세대주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위임장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주민등록등본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가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생애최초 특별공급(43A, 43B, 59A, 59B형만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0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8.)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 ①~③호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1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또한 세대원 전원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천안시 거주자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통계청 고시)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 월평균소득의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이란 함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자 및 만4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금액이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액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l2you.com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단,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징구)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청약자 및 만4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인감도장본인사생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접수시 무주택세대주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소득입증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위임장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주민등록등본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가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28.)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다만,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천안시)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모집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능(1인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니 향후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주 택 형(㎡)	순 위	신 청 자 격
국민주택	43.5457A 43.8479B 59.7860A 59.9297B	1 순 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순 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